
2021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1. 05.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21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



「직업안정법」 제4조의5에 의거하여 민간 고용 서비스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1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 5. 6.

한국고용정보원장

□ 사전 안내사항

- 2022년부터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이 확대·개편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사업 확대 이후 신청, 평가, 인증 방식 등은 변경사항에 따라 내년도 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예정
- 2020년부터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이 개편되어 운영될 예정으로, 금년도 인증기관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부여하고 '21년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혜택은 보장

1. 사업개요

- 민간고용서비스의 표준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 및 공표함으로써 고용서비스의 품질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 지원

2. 인증신청대상

- 인증신청자격
 - 등록 또는 신고한 일자로부터 3년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신청유형	신청대상
직업소개분야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소개 사업자
직업정보제공분야	▪ 직업안정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3. 신청 및 접수기간

- 2021년 5월 6일(목) 공고 시 ~ 6월 16일(수), 24:00

4. 신청방법

-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 기간 내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아래 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구분	신청서류 목록	비고
1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신청서	【별지 제1호】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할 세무서장 발급
3	▪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발급
4	▪ 고용서비스 현황서 *운영계획서(사업계획서) 포함	- 직업소개사업자【별지 제1-1호】 - 직업정보제공사업자【별지 제1-2호】

- 접수기한 : 2021년 6월 16일(수) 24: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http://naver.me/GEA4Ufjc>)

5. 인증기관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 평가기준에 의거한 항목별 평가(6월)
 - 고득점순으로 현장실사 대상기관 선정
- 2차 현장실사 : 현장실사 평가기준에 의거한 항목별 평가(6월~8월)
 - 총 1000점 만점(5개 영역)
- 최종선정 : 인증위원회에서 현장실사 통과 기준점수를 결정하고 인증 대상기관 심의·의결(11월~12월)

6. 우수인증기관 지원사항

- 우수인증기관 대상 인센티브 확대
 - 민간고용서비스 종사자 교육과정 신청시 선발 우대
 -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인증제 홍보 확대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워크넷 내 우수기관 명단 게시
 -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우수기관 안내 및 구직활동 인정(1회)
- 3년간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인증마크 사용
- 고용 관련 정보 및 자료 지원
- 인증현판 제작 및 지원

7. 기타

-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 설명회 사전등록 : 온라인 등록(<https://forms.gle/zyciRU9mmjY67W3H6>)
 - 사업설명회 온라인 동영상 공개: '21. 5. 24.(월) ~ 5. 28.(금)
 - 사업설명회 참여를 위해 기관 담당자 사전등록 진행 예정이며, 사전 등록 참석자 대상 사업설명회 온라인 주소 안내
 - 사업 관련 질의사항은 사전등록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향후 FAQ 형태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안내 예정

※ 설명회 실시 세부계획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에 별도 공지